

의안번호	2203189
의 퇴 인	이종배의원
회 답 일	2024.9.2.
추계번호	24B3166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행복청이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9,9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4억 4,700만원(연평균 2억 8,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안 제53조의2 신설)	289	289	289	289	289	1,447	289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안 제53조의2 신설 (인접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건설청장은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건설청장은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구·기업 수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가는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53조의2(제1항)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계획 수립)	○	•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평가비용은 건설청이 제출한 유사사례 평균 사업비에 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안 제53조의2(제2항)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계획 평가)	○	
	안 제53조의2(제5항)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국가 지원)	×	•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사업계획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국가 지원 규모를 현시점에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구·기업 수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현재 건설청장이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동법 제17조¹⁾에 따른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비용을 추산함
 - －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의 일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1)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 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서로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에 건설청장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하 생략)

을 수립함

- 최근 동법 제17조에 따라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연구
용역 사업비는 연 2.9억원 수준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건설청장이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
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연구용
역 사업비로 유사사례 평균사업비를 바탕으로 추정함
 - 건설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
역도시계획에 따라 시행된 광역지역과의 연계사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2] 행복도시권 광역상생협력 선도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세부추진현황
1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	설계준비중
2	정안IC~내포신도시 연결도로 건설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추진중
3	행복도시~공주 탄천(KTX공주역) 연결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중
4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 도입	국비 예산 미반영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진행 중)
5	청주국제공항 시외 버스 노선 증차	수요 모니터링 중
6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	사전타당성용역 시행 중
7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제5차 국토종합계획 기반영('19)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계획

주: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세부실행방안 및 연계발전전략」 연구용역을 통해 이하의 사업 발굴
자료: 건설청 제출자료

- (사업비) 건설청이 제출한 인접지역과의 개발사업 관련 유사사례 연구용역
사업비 수준이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2021년 이후 건설청에서 인접 광역도시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들은 다음과 같이 5건으로, 연간 2억 8,935만원(월평균 2,411만원×12개월) 수준으로 나타남

[표 3] 행복도시권 광역도시 등 관련 도시계획 연구용역 수립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계약기간	용역기간	사업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세부 실행방안	2021.12~2022.12	12	267
행복도시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변경	2021.12~2023.10	22	845
행복도시 기능변화에 따른 국가적 관리방안	2023.2~2023.10	8	133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운영방안	2022.8~2023.4	8	90
2040년 광역도시계획 상시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세부실행방안 연구	2023.11~2024.10	12	160
합계		62	1,495

자료: 건설청 제출자료

□ (일부추계)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건설청장이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인구·기업 수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계획 및 평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89	289	289	289	289	1,447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건설청의 인접도시간 지원사업계획이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라 광역도시간 도시개발계획 등을 수립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사업비는 달리 나타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행정중심복합건설청과 인접도시간 추진중인 사업 현황

행복청 제출자료

□ 동법 제63조²⁾에 따른 행복도시 광역교통도시대책에 포함되어 추진중인 사업임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추진현황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	2007~2026	2,550억원 (1·2구간 국비 100%, 3구간 국비 50% 지방비 50%)	1·2구간 준공 3구간 공사중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2012~2024	1,432억원	준공
오송 ~ 청주 연결도로	2007~2024	1,777억원	준공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2014~2026	1,583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공사중
회덕 IC 연결도로	2018~2026	1,248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공사중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2021~2029	5,895억원 (국비 100%)	설계중 (타당성재조사 완료)
행복도시 ~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2024~2030	1,800억원 (국비 75% 지방비 25%)	설계 준비중
행복도시~탄천(KTX공주역) 연결도로 2025~2030	2025~2030	4,446억원 (국비 75% 지방비 25%)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중
정안IC~내포신도시 연결도로	2025~2032	1,822억원 (국비 75% 지방비 25%)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예정

자료: 건설청 제출자료

2)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건설청장이 수립한다.
- 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76조, 제82조 및 제90조를 적용하는 경우 “관리청”은 “건설청장”으로 본다.